

『구미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3년 11월 15일

나.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다. 회부일자 : 2013년 11월 18일

라. 상정일자 : 2013년 12월 5일

제18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유 영 명

나.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개정에 따라
구미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중 관련근거 법령 조항을 정비하고
- 재정보증 한도액 상향조정으로 재정보증 운영에 현실화를
기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 한도액 기준을 개정함(안 제4조)
 - 110만원 이상 → 1천만원 이상
- 그 밖에 인용조문 및 용어 정비 등

라. 참고사항

-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박 성 애

○ 본 조례안은

-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개정에 따라 구미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중 관련근거 법령 조항을 정비하고 재정보증 한도액 상향조정으로 재정보증 운영에 현실화를 기하고자 제출된 것으로써,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4조에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 한도액을 110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를 하는 내용임.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개정에 따라 구미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중 관련근거 법령 조항을 정비하고 재정보증 한도액을 110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상향하여 재정보증 운영 현실화에 기여하고, 법령 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를 위해 제출된 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